

제 1104 호  
1985. 6. 1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열 모 원호  
편집인 : 공 보 관 조 남  
전 화 : 731-6111-3  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 
전 화 : 735-3337

# 시보

## 차례

### ◎ 고 시

- 제 362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, 하수도) 변경지적승인 ..... 3  
제 363 호 : 마포로제 1 구역제 16 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..... 3  
제 364 호 : 서초근린공원조성계획 일부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..... 4  
제 365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정정고시 ..... 4

### ◎ 공 고

- 제 324 호 : 도시계획사업 (공원) 실시계획 공람공고 ..... 5  
제 329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 공람공고 ..... 5

### ◎ 사 령

공													
람		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서울특별시

1170

제 1104 호 시

보 1985.6.1 6-3

## 고 시

## 서울특별시 고시 제 362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, 하수도)  
변경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50 호(85.5.  
25)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

(도로, 하수도)을 도시계획법 제  
13조와 동법 시행령 제 6조 1항의  
권한위임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 
이 지적승인 한다.

2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 
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  
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6.1

서울특별시장

## 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 지적승인 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너비(m)	길이(m)	기 점	종 점	비 고
기정	소로	3	6	1,320	방학동 289-1	방학동 500-2	
변경	"	"	"	1,328	"	"	노선 연장 L = 8m

## 나.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 변경 지적승인 조서

구분	폭원(m)	연장(m)	기 점	종 점	비 고
기정	5-6	1,035	방학동 272-4	방학동 213-2	
변경	"	"	"	"	지현사정으로 인한 일 부 구간위치 변경

## 서울특별시 고시 제 363 호

마포로제 1 구역 제 16 지구재개발  
사업시행변경인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9 호(83.  
4.15)로 사업시행인가 된 마포로  
제 1 구역 제 16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

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2조 및 동  
법 시행령 제 58조 규정에 의하여 아  
래와 같이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  
가(시행기간 연장)하고 동법 제  
1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 
한다.

1985.6.1

서울특별시장

6-4 제 1104 호 시

보 1985.6.1

- 가. 변경인가 내용  
 ① 시행기간: 기점 '83.4.15-'85.4.30  
 변경 '83.4.15-'85.7.30  
 나. 변경이유: 공공용지상의 건물 철거 지연  
 다. 기타사항: 변경 전 인가 내용과 동일

### 서울특별시고시제 364호

#### 서초근린공원조성계획 일부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시 고시 제 323호 ('85.5.15)  
로 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된 서  
초근린공원 조성계획(문화회관)에 대하여

여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법 제4조와  
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 
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  
성계획(문화회관) 일부 변경 결정하고,  
 2.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 및 동  
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 
지적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  
 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원과와  
강남구청 공원녹지과 및 문교부 사  
회교육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 
인다.

1985.6.1.

서울특별시장

#### 가. 공원조성계획(문화회관)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

구분	번호	시설명	위치	부지면적	시설규모		비고
					바닥면적	연면적	
기점	32	문화회관	반포동산 94-4 일대	6,610 ㎡	-	1,500 ㎡	
변경	"	"	"	6,610	1,500 ㎡	4,950 ㎡	지하1층 지상3층

나. 관계도면: 변경없음.

### 서울특별시고시제 365호

####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 인가정정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10호 ('84.8.25)  
로 성동구 광장동 146의 1 일원 "워커힐"

- 시계간 도로확장공사"를 위한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내용중  
다음과 같이 건물조사 일부사항이 확오  
기재 되었기 이를 정정 고시한다.

1985.6.1.

서울특별시장

#### 정정사항(건물조사)

구분	지번	구조	면적	소유자	
				주소	설명
변경전	성동구 광장동 62	연화조스라브	1층 715 ㎡ 6층 103 ㎡	강남구 도곡동 영동 아파트 6동 103	송재중
변경후	상동	상동	1층 15 ㎡ 2층 15 ㎡	상동	송재중

제1104호 시

보 1985.6.1 6-5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24 호

도시계획사업(공원)  
실시계획 공람공고

1. 건설부고시 제87호(83.3.14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23호(84.4.25)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봉구 도시계획시설(불암산 자연공원)에 대하여,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허가에 따른 서류공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,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에게 공람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, 일반에게 공람하며, 등 사업에 따른 의견을 공람기일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기 바람.

1985. 6. 1.  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 도봉구  
공룡동 산 223-19  
나. 사업의종류: 도시계획사업(공원)  
다. 사업규모 및 편적:

1) L = 258 m,  
B = 3 m (크로스컨트리)

2) 면적 772 m<sup>2</sup>  
라. 사업시행자: 대한체육회장  
마. 사업시행기간:  
'85.6.10~'85.12.10 (예정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29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  
실시계획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196호(76.8.16)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과 동 고시 제350호(85.5.25) 및 동 고시 제362호(85.6.1)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로에 대하여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2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한국공항주식회사(T 663-8621-5)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.

1985. 6. 1.  
서울특별시장

6-6      제1104호 시

보 1985.6.1

사정

© 1985년 6월 1일자

제 179 호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노수만	내무국의전파 근무를 명함	기획관리실 시정개발담당관	지방행정주사

© 1985년 6월 1일자

मुद्रा नं 180 ह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김재현	대법원판결(사건 84누 684 : 85.4. 28)에 의하여 83.6.17자 견책 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.	관악구 주택과장	지방행정사무판
김건식	대법원판결(사건 84누 628 : 85.4. 23)에 의하여 83.6.17자 견책 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.	구로구 세무2과장	
김일섭	대법원판결(사건 84누 675 : 85.5. 1)에 의하여 83.6.17 해임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. 성동구 근무를 명함	(전) 성동구 건설관리과	지방행정주사보

## 서 울 특 별 시 장